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2

국어 영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나)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정을 ②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시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③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다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리핀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글 시작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대상과 목적을 주고, 이로부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끌어내는군. 그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서술하려나? 그럴 거같은 한데 아직 확정은 못하겠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맞네. 일단 공정거래법의 활용인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초점을 맞춰 읽어야겠다.”

+

[원칙적으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원칙적으로’의 수식어를 덧붙여서 쓴 이유는,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예외가 등장할 수 있으니 예외가 나오면 반응할 준비를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 ㉢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 초반부 이후 독해 >

실시간으로 스위치 두 개를 계속 켜놔야 한다.

1.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앞의 내용에 대한 재진술·구체화인지, 아니면 범주가 다른 내용인지 판단
2. 한 범주가 끝날 때마다 해당 범주의 정보 덩어리가 전체 글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목차 만드는 느낌으로 읽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뭔지 설명하겠군. 기본 정보 세팅 구간이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정의 {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

#정의에서 case가 두 개로 쪼개짐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요소를 하위 요소 몇 개로 쪼개면, 내용도 쪼개진 대로 따로 따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저렇게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직선을 이용해 나타내 주었다.

"이후,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으므로, 차례대로 넘버링 해주면서 읽는다." (㉣, ㉤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설명)

#강제 항목화

키워드에 대한 설명에서 각 설명의 범주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의미 단위로 끊어 전부 넘버링 한 후, 범주를 구분해주면 된다. 강제로 이렇게 항목화해야 지문의 내용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앞서 [원칙적으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외가 나오면 반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지없이 예외가 나왔다. 예외는 총 두 가지."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아, 범주가 바뀌었구나. 이제 표시광고법의 활용인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에 문장을 붙이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 ㉢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 객관적 내용으로 ㉱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부당한 광고 구체화
㉳ 거짓·과장 광고 ㉴ 기만 광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에 화제에 대해 요소를 '공정거래법' 과 '표시광고법'으로 쪼갰다. 쪼개진 두 요소를 각각 서술할 때는, 지문에서 써주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그 두 요소를 비교, 대조해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공통서술범주**'이다. 같은 범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면, 앞서 읽었던 요소와 같은지 다른지 비교, 대조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 라는 서술 범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비교, 대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통점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만 해당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표시광고법에 대한 세부 설명의 연속이다. 이제부터는 '부당광고'에 대해 심사 기준을 쓸 것 같다."

추천·보증
㉬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

"여기서도 추천 보증에 대해 케이스를 둘로 쪼갰다. 각각 위와 같이 처리해야겠다."

이용후기 광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부당한 광고가 되는 조건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다. 추상적이지 않은가...? '합리적'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이를 구체화해주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이를 물어보고 싶을 때 구체화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기출이 그래왔기 때문에."

+ ㉰~㉲ 총족 -> 명예훼손 X
"현재 서술 범주인 '부당한 광고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TMI 정보가 종종 등장하곤 한다. 잠깐 등장하는 TMI 정보가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처리해두고 넘어가기."

결국,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본정보 세팅)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⑤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⑥지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②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추천·보증

- ①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 ②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
 -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

이용후기 광고

-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 + ①~③ 충족 -> 명예훼손 X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4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지문 설명에서 쓴 바와 같이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한 비교, 대조를 능동적으로 해주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통점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만 해당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④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

③ :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②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 3번 선지와 같이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추천, 보증에 대해 케이스를 둘로 나눴었다. 이때 넘버링 하면서 읽을 때 분리시켜 봤으면, 이 선지를 읽었을 때 "아, 두 케이스를 섞어 놓은 것이구나. 범주가 틀렸다."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 5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예외 잘 잡았으면 '작은'이 아니라 '큰' 경우라고 해야 맞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②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맞다.

⑤ : ㉠은 사업자 ⇔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이고, ㉡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지문에서 이용후기 광고의 정의를 잘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직접 올린 이용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 6번 문항 해설 >

정답: ③

< 보기 >를 지문과 연결지어 읽기

< 보기 >도 지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과 붙이면 서 읽어야 한다. 선지로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 보기 >를 읽을 때부터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소리다.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

⇒표시광고법에 대한 '부당 광고 심사 기준' 설명에서 나온 예시 '이용후기 광고'에 해당한다.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

⇒지문에서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 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내용이 있다. '합리적 이유'의 추상성에 주의할 준비 해야함.

⇒ ①에서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는 아무리 '합리적'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이것은 논쟁의 여지없이 당연히 비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

⇒지문에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한 사례에 해당' ⇒ ② 지문의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에서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이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이용후기의 예시에 해당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

⇒지문 맨 마지막에 나온 TMI 정보에 해당. 선지에서 "①객관적 내용으로 ②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③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의 조건에 따라 판단 유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여지없이 ⑤번 선지에서 물어본다.

[③ 선지 판단의 근거]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1번 설명 ①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에 완벽히 모순되는 말이므로 3번 선지는 틀렸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도 그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다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